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“잔고”를 “잔액”으로, “지불”을 “지급”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,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」 등 11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,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

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 12개 교육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」의 개정)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4호서식 중 “(전공학과 명기)”를 “(전공학과 명확하게 적음)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, “정하여야”를 “정해야”로 한다.

제3조(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임시직의 종류란 중 “노임”을 “임금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의 개정)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임시직의 종류란 중 “노임”을 “임금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의 개정)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당해연도안에”를 “해당 연도 안에”로, “연도안에”를 “연도 안에”로, “명기하여”를 “명확하게 적어”로 한다.

제22조의2제4항 전단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39조제2항 중 “노임지급명세표등을”을 “임금지급명세표등을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58조제2항 전단 중 “예금잔고”를 “예금잔액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별표 2 제3호의 세부 내역란 중 “지불할 수 있음”을 “지급할 수 있음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7호의 세부 내역란 중 “지불금”을 “지급금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(二)부채와자본의 (1)유동부채 중 “지불어음”을 “지급어음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4호서식 중 “지불명령자”를 “지급명령자”로 한다.

별지 제29호서식 중 “잔고”를 “잔액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0호서식 중 “지불액(3)”을 “지급액(3)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의 개정)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2호 4100 보수의 4120 직원보수의 목란 중 “노임”을 “임금”으로 하고, 같은 4120 직원보수의 해설란 중 “노임”을 “임금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 1100 유동자산의 1110 유동자금의 현금의 해설란 중 “전도액(前渡額)”을 “선지금액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2호 4100 보수의 4120 직원보수의 목란 중 “노임”을 “임금”으로 하고, 같은 4120 직원보수의 해설란 중 “노임”을 “임금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“(절취선)”을 “(자르는 선)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78호서식 중 “지불금”을 “지급금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0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3호 중 “공란으로”를 “빈칸으로”로 한다.

제9조(「학교건강검사규칙」의 개정)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제3호나목 중 “공란”을 각각 “빈칸”으로 하고, 같은 호

다목의 “공란”을 각각 “빈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제2호 중 “공란”을 각각 “빈칸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급수현황 중 “음용수”를 “먹는물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입회”를 “참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중 “공란으로”를 “빈칸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미수채권 등의 평가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과거 의 대손율 등을 <u>감안하여</u> 합리 적이고 객관적으로 <u>정하여야</u> 한 다.	제38조(미수채권 등의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고려하여</u> ----- ----- <u>정해야</u> ----- --.

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)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<u>당해연도안에</u>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<u>연도안에</u>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<u>명기하여</u> 이를 사용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22조(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) ①----- ----- ----- <u>해당 연도 안</u> <u>에</u> ----- ----- -- <u>연도 안에</u> ----- ----- ----- <u>명확하게 적</u> <u>언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2(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) ① ~ ③ (생략) ④관할청은 해당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<u>감안하여</u> 적립금의 적립여부·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	제22조의2(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<u>고려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제39조(직영공사) ① (생략)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는 작업	제39조(직영공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

일지와 자재수급부·<u>노임지급</u> <u>명세표등을</u>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·관리 및 감 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<u>하여야</u> 한다. 제58조(사무의 인계인수) ① (생 략) ②인계자는 <u>예금잔고</u>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이사장에게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 이 경우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을 거쳐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	-----<u>임금지급</u> <u>명세표등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야</u> -----. 제58조(사무의 인계인수) ① (현 행과 같음) ②----- <u>예금잔액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해야</u> ----- ---. ----- ----- <u>제출해야</u> ----- ---.
--	--